(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 55분)

○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예비심사는 실,국별 직제순으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목 차

1.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괄 ····· 229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및 증감내역 ····· 229

나.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230

2. 검토의견 ····· 231

一. 보사환경국 소관 ····· 231

二. 가정복지국 소관 ····· 232

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보사환경국 소관) ····· 233

1.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가. 一般會計 歲出豫算規模 및 增減內譯

(單位 : 백만원)

區分		追更豫算案		既定豫算額		增 △ 減	
		金 額	%	金 額	%	金 額	%
合計		313,307	100	314,054	100	△746	△0.2
基本的經費		33,351	10.6	33,450	10.7	△99	△0.3
	人件費	17,141	5.6	17,123	5.5	19	0.1
	官署運營費	8,259	2.7	9,398	3.0	△139	△1.5
	基本經常費	6,951	2.3	6,929	2.2	22	0.3
事業費		232,171	74.1	234,157	74.5	△1,985	△0.8
	經常事業費	12,121	3.9	12,027	3.8	94	0.8
	主要事業費	220,050	70.2	222,130	70.7	△2,079	0.9
其他經費		47,785	15.3	46,447	14.8	1,338	2.9

※ 忠淸北道 一般會計 總規模임.

○ 一般會計 歲出豫算은 3,140億5千4百萬원이었으나 追加豫算案의 歲出豫算案은 既定豫算對備 0.2%인 7億4千6百萬원이 減額된 3,133億7百萬원 規模임.

나. 199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세출안규모(국 소관별)

(단위 : 백만원)

국소관별	'91. 3회 추 경 안	%	기정예산	%	증 △ 감	%
합 계	43,126	100	46,358	100	△3,232	△7
보사환경국	35,504	82.3	38,427	82.9	△2,923	△7.6
가정복지국	7,622	17.7	7,931	17.1	△309	△3.9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국소관별	'91. 3회 추 경 안	%	기정예산	%	증 △ 감	%
보사환경국	11,788	-	11,134	-	654	5.9

2. 검토의견

一.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해보면 기정예산 384억 2천 7백만원에 비해 7.6%가 감소된 29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 사업비가 97%에 해당되는 28억 2천 8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도비 9천 5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그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 증진 사업비 1억 6천 2백만원은 장애아 시설 난방시설 개보수공사비로 국고가 50%지원되는 사업 임.

둘째, 노정관리사업비 △7백만원은 전액 국고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임.

셋째, 영세민 보호사업비는 △3억 4천 7백만원

- 생활보호자 시설수용 보호비 △4천 3백만원
- 생활보호자 거택 구호비 △2억 2천만원
-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비 △ 2억 7천 1백만원
-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지원비 △5억 3천 4백만원
- 거택구호자월동대책추가지원비 5억 3천만원
- 시설보호자 월동대책추가지원비 1억 9천 1백만원으로 84%인 2억 9천 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음.

넷째, 영세민보호사업비중 기타 경비는 1억 3천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억 2천 3백만원에 대한 20%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경비 임.

다섯째, 부랑인보호 사업비는 3천 4백만원으로 부랑인 시설운영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랑인 시설 생계비 3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여섯째, 보건 의정 사업비 △6백만원은 전액국고로 공중보건의 활동비 과다 책정으로 감액.

일곱째, 보건기관 운영 사업비 1천 7백만원은 보건진료원 인건비 1천 1백만원과 보건지소 장비보강 6백만원으로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는 예산임.

여덟째, 환경보호사업비 △29억 5백만원으로 옥천군 축산폐수 수거 처리시설 미착공으로 20억 5천 2백만원과 분뇨처리 시설(3개소) 예산집행 잔액으로 계상된 예산임.

위와 같이 국고의 큰 감액요인은 환경보호사업비 29억 5백만원으로 환경처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바, 수용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액이 불가피하며 기타 사업도 국비의 추가보조와 '91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예산이지만, 장애인 시설 난방시설 개수공사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二. 가정복지국 소관의 '9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분석해보면 기정예산 79억 3천 1백만원에 비하여 3.9%가 감소된 3억 9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비 3억 3천 1백만원, 도비감소 및 도비의 추가사업비 2천 1백만원이 지원되었음.

그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아동복지 사업비는 △3억 9백만원

- 아동직업훈련,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백만원
- 보육시설운영비(종사원 인건비) △3억 5천 4백만원
- 아동 건전 육성비 1천 5백만원
- 아동복지시설(현양원)확충 7백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4개소) 2천 1백만원으로 국비 3억 1천 8백만원이 감

액되었으며 도비 9백만원이 추가지원 및 별도 책정되었음.

둘째, 노인복지사업비는 6백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연료비, 노령수당이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으로 지원되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임.

셋째, 부녀 복지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대상자 감소로 △5천 1백만원

- 모자보호시설(성가모자원)보강 2천 9백만원
- 모자보호시설(성가모자원)연료비 2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음.

넷째, 청소년 복지사업비 1천 3백만원은 도비로 청소년 10개년계획서 발간 9백만원과 국비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위와 같이 '9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거의 주요사업비로 국고감액 요인은, 보육시설 운영비중 종사자인건비가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비도 국비를 결산하는 예산이지만,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4개시설 보강사업비는 향후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5천 4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2천 3백만원에 따른 도비 1억 3천 1백만원의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의 진료비 부족분으로 지원, 지출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